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양육비 선지급 [] 적합 [] 대상제외 결정통지서(신청인용)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
[] 적합

1.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, **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지원자녀명	신청인과의 관계	선지급금(월)	선지급 시작 달
		원	년 월

2. 지원금액은 선지급 결정이 통지된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(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)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
3. **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.**
 가.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
 나. 양육자가 변동된 경우
 다.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
 라.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
 ※ (예시)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·실종·혼인한 경우 등
4.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**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**할 수 있습니다.
5.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당 월까지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아 선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※ 또한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7.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[] 대상제외

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, 아래와 같은 사유로 **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에서 제외**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<대상제외 사유>

[] 가.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은 경우(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)
[] 나.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[] 다.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:
 ※ (예시)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, 선지급 신청인을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등

※ 업무담당자: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이의신청 안내

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